

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(안)

의안 번호	2017 - 30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. 02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소유의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임대기간(10년, ※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중 임대수익과 임대종료 후에는 발전수익으로 평창군의 세외수익을 창출하고,
- 태양광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(주요골자)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미탄면 BOT 태양광발전소 건설
※ BOT : Build Operate Transfer(건설-운영-양도)
- 사업위치 : 평창군 미탄면 읍치리 489-16번지 일원
- 사업면적 : 1,058,614㎡(군유지 619,847㎡, 사유지 408,814㎡, 국유지 29,953㎡)
- 사업규모 : 30MW
- 사업비 : 500억원(민자 100%)
- 사업자 : (주)태환 이기경(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63-9)
- 임대기간 : 2017. 04월 ~ 2027. 03월(10년간) ※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
- 임대면적 : 군유지 95필지 619,847㎡(187,503평)

나. 현재까지 추진상황

- 태양광발전 사업 제안서 제출 / 2016.08.04
- 태양광발전소 조성 추진계획 수립 / 2016.10.05
-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협약 체결 결의 / 2016.11.09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공공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영구시설 축조 군의회 동의 / 2017.03
- 공유재산 이관(재무과, 산림과) / 2017.03
-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/ 2017.03.
- 공사착공 / 2017.04.
- 시운전 및 준공(상업운전 개시) / 2017.12.

3. 근거법령 : [붙임1]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4. 참고자료

- 발전시설 설치 위치도 : [붙임2]
-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예정지(안) : [붙임3]
-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시설물축조 예정지(안) : [붙임4]

[붙임1]

관계법령

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<신설 2013.7.30.>

[전문개정 2010.4.12.]

□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.]

□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』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7.7.>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2.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·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
3.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4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이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5. 제29조제1항제13호·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6.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
7. 매각·양여·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

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. 다만,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.

8.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

9.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(空中)·지상·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

10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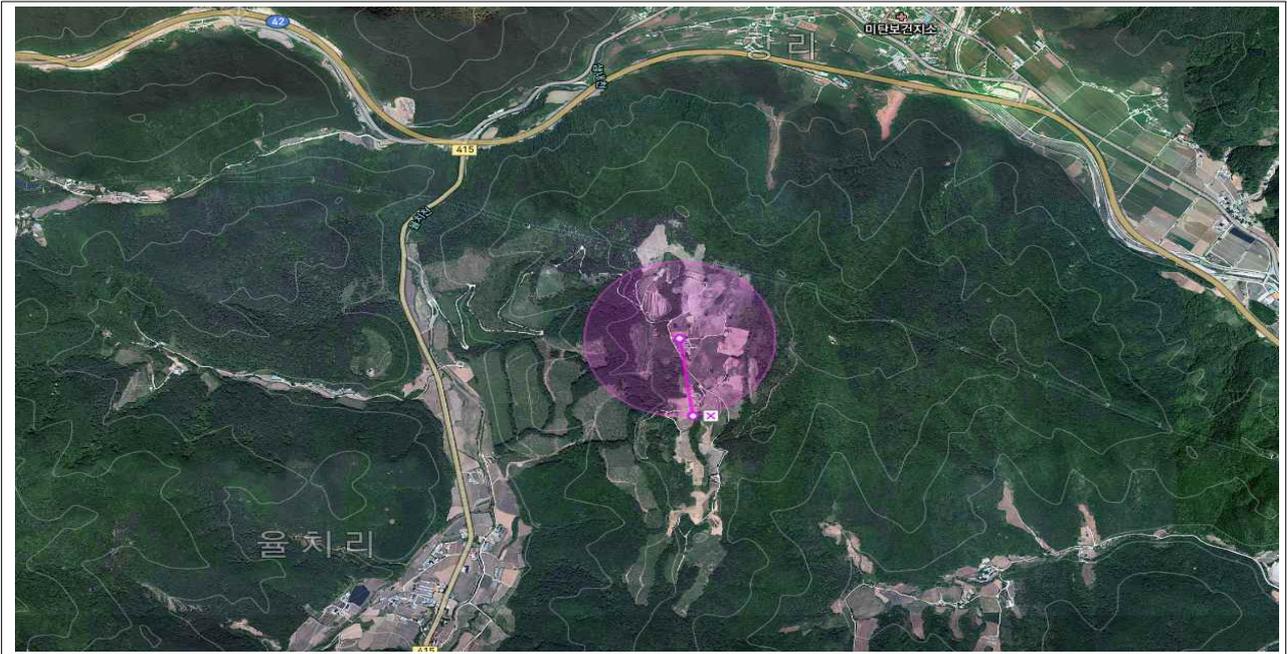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7.7.>

[전문개정 2009.4.24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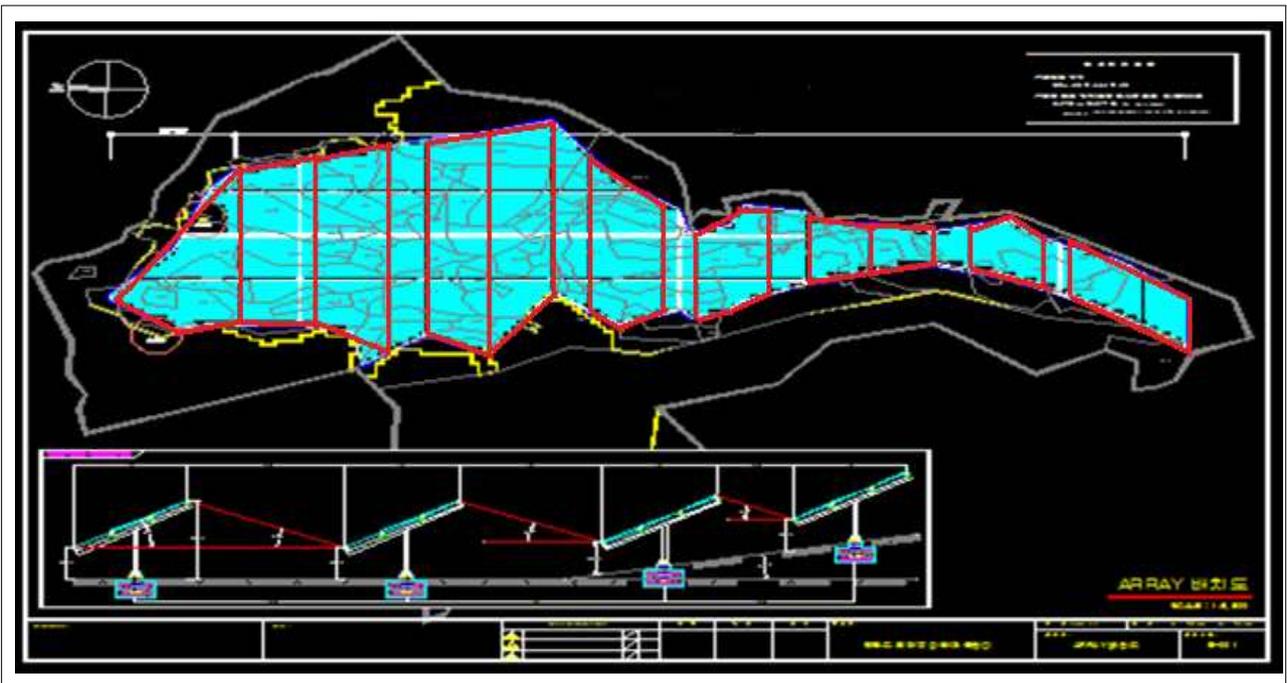
[붙임2]

위 치 도



[붙임3]

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지(안)



[붙임4]

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시설물 축조 예정지(안)

○ 총괄

재산의 구분	설치면적 (m ²)	발전용량 (KW)	비고
계	1,058,614	30,000	
군유지	619,847	30,000	부지활용 공작물 등
국유지	29,953		부지활용 공작물 등
사유지	408,814		부지활용 공작물 등

○ 설치예정지(군유지)

번호	위치	지번	지목	지적(m ²)	설치예정 (m ²)	소유자	토지이용
계				620,329	619,847		
1	미탄면 울치리	489-10	전	12,310	12,310	평창군	계획,준보전산지
2	미탄면 울치리	489-11	전	11,549	11,549	평창군	계획,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준보전
3	미탄면 울치리	489-12	임	10,932	10,932	평창군	계획,준보전
4	미탄면 울치리	489-13	전	4,938	4,938	평창군	계획,준보전
5	미탄면 울치리	489-14	전	11,568	11,568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임업용,준보전,
6	미탄면 울치리	489-15	임	2,914	2,914	평창군	계획,준보전
7	미탄면 울치리	489-16	전	11,302	11,302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임업용
8	미탄면 울치리	489-17	전	1,500	1,500	평창군	계획
9	미탄면 울치리	489-18	전	1,416	1,416	평창군	계획
9-1	미탄면 울치리	489-19	임	13,414	13,414	평창군	계획,준보전
10	미탄면 울치리	489-20	임	7,259	7,259	평창군	계획,산림보호
11	미탄면 울치리	489-21	임	9,994	9,994	평창군	계획,준보전
12	미탄면 울치리	489-22	임	2,680	2,680	평창군	계획,준보전
13	미탄면 울치리	489-23	임	11,674	11,674	평창군	계획,준보전,초지
14	미탄면 울치리	489-24	임	900	900	평창군	계획,준보전
15	미탄면 울치리	489-25	전	313	313	평창군	계획

16	미탄면	울치리	489-26	임	2,314	2,314	평창군	계획,준보전,산림보호
17	미탄면	울치리	489-27	전	4,000	4,000	평창군	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임업용
18	미탄면	울치리	489-28	전	3,227	3,227	평창군	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임업용
19	미탄면	울치리	489-29	임	2,385	2,385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20	미탄면	울치리	489-30	임	1,270	1,270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21	미탄면	울치리	489-31	임	1,700	1,700	평창군	계획,준보전
22	미탄면	울치리	489-32	임	1,043	1,043	평창군	계획,준보전
23	미탄면	울치리	489-33	임	604	604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24	미탄면	울치리	489-35	임	6,483	6,483	평창군	계획,준보전
25	미탄면	울치리	489-36	임	8,620	8,571	평창군	계획,준보전
26	미탄면	울치리	489-37	임	2,680	2,680	평창군	보전,준보전
27	미탄면	울치리	489-38	전	5,769	5,769	평창군	계획,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
28	미탄면	울치리	489-39	전	3,686	3,686	평창군	계획,준보전
29	미탄면	울치리	489-40	전	1,741	1,741	평창군	계획
30	미탄면	울치리	489-41	전	1,619	1,619	평창군	계획,준보전
31	미탄면	울치리	489-42	전	2,796	2,796	평창군	계획,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준보전
32	미탄면	울치리	489-43	전	3,621	3,621	평창군	계획,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준보전
33	미탄면	울치리	489-44	임	963	963	평창군	계획,준보전
34	미탄면	울치리	489-45	전	4,415	4,415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임업용,준보전
35	미탄면	울치리	489-46	전	6,195	6,195	평창군	계획,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임업용,준보전
36	미탄면	울치리	489-47	임	4,959	4,959	평창군	계획,준보전
37	미탄면	울치리	489-48	전	1,392	1,392	평창군	계획,준보전
38	미탄면	울치리	489-49	전	2,851	2,851	평창군	계획
39	미탄면	울치리	489-50	전	6,000	6,000	평창군	계획,준보전
40	미탄면	울치리	489-51	임	1,107	1,107	평창군	계획,준보전

41	미탄면	울치리	489-52	임	4,030	4,030	평창군	계획,준보전,초지
42	미탄면	울치리	489-53	임	1,502	1,502	평창군	계획,준보전
43	미탄면	울치리	489-54	목	17,115	17,115	평창군	계획,초지
44	미탄면	울치리	489-55	전	1,542	1,542	평창군	계획,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준보전
45	미탄면	울치리	489-56	전	7,652	7,652	평창군	
46	미탄면	울치리	489-57	전	1,275	1,275	평창군	계획,준보전
47	미탄면	울치리	489-58	임	49,687	49,687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임업용,준보전
48	미탄면	울치리	489-59	임	27,326	27,326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임업용,준보전
49	미탄면	울치리	489-60	임	7,520	7,520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
50	미탄면	울치리	489-61	전	561	561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51	미탄면	울치리	489-62	대	181	181	평창군	계획
52	미탄면	울치리	489-63	대	369	369	평창군	계획
53	미탄면	울치리	489-64	대	116	116	평창군	계획
54	미탄면	울치리	489-68	도	956	956	평창군	농림,보전,초지,산림보호
55	미탄면	울치리	489-69	전	711	711	평창군	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
56	미탄면	울치리	489-70	전	409	409	평창군	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
57	미탄면	울치리	489-71	도	1,202	1,202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58	미탄면	울치리	489-72	도	528	528	평창군	농림,보전관리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59	미탄면	울치리	489-73	도	191	191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60	미탄면	울치리	489-74	도	61	61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61	미탄면	울치리	489-75	도	82	82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62	미탄면	울치리	489-76	도	443	443	평창군	계획
63	미탄면	울치리	489-77	전	926	926	평창군	계획
64	미탄면	울치리	489-78	도	657	657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65	미탄면	울치리	489-79	임	148	148	평창군	계획,준보전
66	미탄면	울치리	489-80	임	2,746	2,746	평창군	계획,준보전
67	미탄면	울치리	489-81	임	3,474	3,474	평창군	계획,준보전
68	미탄면	울치리	489-82	도	298	298	평창군	계획

69	미탄면	울치리	489-83	도	48	48	평창군	계획
70	미탄면	울치리	489-84	전	107	107	평창군	계획
71	미탄면	울치리	489-85	도	45	45	평창군	계획, 준보전
72	미탄면	울치리	489-86	전	1,071	1,071	평창군	계획,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
73	미탄면	울치리	489-87	도	356	356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74	미탄면	울치리	489-88	전	641	641	평창군	계획
75	미탄면	울치리	489-89	도	200	200	평창군	계획
76	미탄면	울치리	489-90	도	157	157	평창군	계획
77	미탄면	울치리	489-91	전	308	308	평창군	계획,준보전
78	미탄면	울치리	489-92	도	124	124	평창군	계획
79	미탄면	울치리	489-93	도	331	331	평창군	계획
80	미탄면	울치리	489-94	도	1,139	1,139	평창군	계획관리,초지
81	미탄면	울치리	489-95	도	169	169	평창군	계획관리,초지
82	미탄면	울치리	489-96	전	87	87	평창군	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
83	미탄면	울치리	489-97	임	110	110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84	미탄면	울치리	산1-1	임	184,028	183,595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85	미탄면	울치리	산1-24	임	797	797	평창군	농림,보전,임업용,초지
86	미탄면	울치리	산20-1	임	51,945	51,945	평창군	계획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87	미탄면	울치리	산20-30	임	5,163	5,163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88	미탄면	울치리	산20-31	임	6,001	6,001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89	미탄면	울치리	산20-32	임	6,080	6,080	평창군	보전관리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90	미탄면	울치리	산20-34	임	30,157	30,157	평창군	계획관리,농림,보전,준보전,산림보호
91	미탄면	울치리	산20-38	임	2,555	2,555	평창군	농림,산림보호,공익용,보전,준보전
92	미탄면	울치리	산20-39	임	164	164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93	미탄면	울치리	산20-41	임	142	142	평창군	농림,보전,산림보호
94	미탄면	울치리	산20-43	임	593	593	평창군	계획,준보전